

대학원 미생물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미생물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미생물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미생물학과 소속 교수들은 미생물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과목개설)

제6조 (교·강사 배정)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과정은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 혹은 등재 후보지에 주저자(공동 주저자일 경우 한 명만 면제)로 논문 1편 이상, 박사 혹은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은 논문 2편 이상 게재 시 학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단, 논문 게재 승인 일자가 **전기는 3월, 후기는 9월 이내**여야 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에 대해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없음.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공인어학성적 제출 혹은 해외 수학(연수) 증빙 시에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내국인 학생은 영어 성적으로만 가능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수학의 경우, 내국인 학생은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 외국인 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 과정 선택은 지도교수 선정 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석사학위 취득방법으로 학위논문 작성 이외에 연구논문(논문대체) 방법으로도 석사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제14조 (예비발표)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지도교수와 1인의 교내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로 진행한다. 연구논문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학과로 연구논문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한다.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 가능하다.

*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